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5

발의연월일 : 2024. 11. 13.

발 의 자 : 이진환, 전혜연,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정현미, 김지훈(민)

1. 제안이유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 등 연구활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존속기한 규정(제4조제3항)

나. 소속 연구단체 제척·회피 규정 (제6조제5항)

다. 규정 위반시 연구활동비 회수 규정 (제12조의3항)

라. 결과보고서, 연구용역의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 및 공개 규정(제13조1항,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원 임기만료일”을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단체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 연구용역의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①·② (생 략)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단체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 활동을 완료한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 설>	결과보고서, 연구용역의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붙 임 **비용추계 관련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윤선기